

외국의 양육수당 사례와 정책 시사점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대체 수당에 한하여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우리의 양육수당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유급출산 및 부모 휴가 이후 영아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어머니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 성격을 띠면서도 부모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양육 수당이 소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 제도가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 미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며, 지원 액수는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이다. 제도 도입 이후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이 다소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대체 수당에

한하여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우리의 양육수당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체의 대상은 보육서비스와 어머니의 근로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체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유급 육아휴가 이후에 적용된다. 한편 어머니의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출산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례를 볼 수 있다.

2.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가. 핀란드: Child home Care Allowance

핀란드에서는 유급 출산 및 부모휴가 이후 만3세 이하 영아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부모가 아동을 집에서 보육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199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전체적인 보육지원 방식의 하나이다. 사립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를 수당형태의 현금으로 지원한다.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child care leave)¹⁾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이후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이 때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세미만 혹은 취학연령의 자녀를 위한 시간제 육아휴직(part-time child care leave)제도도 있고, 이 기간 동안 부분적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 지불 조건은 부모 직접 양육이 아니고 공적, 사적 보육서비스 미이용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불한다.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 이외에

가족규모나 월급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2011년도 현재 기본 양육수당은 매달 315.54유로이다.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 보조금 160.64유로에 비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수준이 높다. 양육수당은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추가된다. 3세 이하 자녀는 한 명당 94.47유로, 3세 이상은 60.70유로가 추가된다. 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한명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데, 매달 168.86유로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축형 부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90.36유로를 받는다.

아동양육수당은 출산 및 부모 휴가 수당과 다르게 조세 대상 수입으로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에서 지불한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2010년 기준으로 가정 양육수당 받은 가구는 65,578가구로 가구당 평균 383유로를 받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시설 이용자는 13,998명으로 가구당 평균 202유로를 받았다. 시설과 직접 양육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가구도 13,998가구이다(표 1 참조).

〈 표 1 〉 핀란드 아동 보육 관련 보조금: 2011

단위: €/월

구 분	사립시설 미이용	사립시설 이용	부분 양육 보조금
아동 1인당(2011)	315.54	160.64	90.36
3세 미만아 추가시	94.47	-	-
3세 미만아 추가시	60.70	-	-
부가	168.86	-	-
가구 수 (2010)	65,578(3,9)	13,998	11,825
가구당 평균(2010)	383	204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11). Families with children.
<http://www.stm.fi>

1) 부모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는 없음.

〈 표 2 〉 핀란드 아동수당: 2011

단위: €/월

구분	첫자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이상	한부모 가족 아동 1인당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	100.40	141.56	141.56	162.15	182.73	46.79

자료: Ministry of Finance(2011). Budget review 2011.

참고로 핀란드도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많은 국가인데, 대표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순위에 차이가 나고,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46.79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표 2 참조).

나. 노르웨이: 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

노르웨이에서도 부모에게 부모의 육아휴가가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어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를²⁾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돋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하여

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1~2세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취학전 입양 아동으로 최대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주당 33시간 미만이하로 시간제(part-time)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현금수당 금액은 국회(the Storting)가 정하며 비과세 대상이다. 2007년도 기준으로 공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39,639크로네(한달 412유로)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다.

이 수당은 아동법(the Children's Act)에 근거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아동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 표 3 〉 노르웨이 주당 공공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영유아 현금수당 규모(2007)

단위: %, 가구

구분	미이용	8시간 이하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비율	100	80	60	40	20	0
연 지원액(NOK)	39,639	31,704	23,784	15,852	7,932	-

자료: 노르웨이 아동평등부(2007). The Rights of Parents with Small Children.
<http://www.regjeringen.no>

2) 자료에 따라서는 'cash-for care' 라고도 함.

〈표 4〉 노르웨이 제 특성별 양육수당 수혜 비율: 2010

단위: %

구분	1-2세 전체	연령		자녀수			모의 근로			
		1세	2세	1명	2명	3명	주 37시간 이하	주 37시간 이상	휴직	미취업
비율	67	68	67	71	66	64	61	44	69	85

자료: http://www.ssb.no/kontantstotte_en/tab-2011-05-02-04-en.html

〈표 4〉를 보면 1, 2세아의 2/3가 국가 지원 영유아기관 서비스 대신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고, 자녀수는 한 자녀일 때 비율이 다소 높으며,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상태가 85%로 가장 높고, 다음이 휴직, 주당 37시간 이하 근로의 순이다.

〈표 5〉는 자녀 연령별로 양육수당 수혜자의 수당 미지급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인데 34%가 양육수당을 주지 않아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이를 직접 부모가 기르는데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책임감을 나타낸다 하겠다. 어머니의 근로 특성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주당 37시간 이상인 부모가 기관서비스 이용 의사가 63%로 가장 높다.

3. 어머니 근로급여 대체 양육수당

가. 프랑스

프랑스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활동을 못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 축소 정도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업활동 선택보조금으로 프랑스의 수당체계의 하나로 아동보육수당 중 기초수당(L' allocation de base)과 연동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

1) 직업활동 선택보조금

이는 첫 번째 아이 혹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a

〈표 5〉 노르웨이 자녀 연령별 양육수당 수혜자의 수당 미지급시 서비스 이용 의사: 2010

단위: %

구분	1-2세 전체	연령		자녀수			모의 근로			
		1세	2세	1명	2명	3명	주 37시간 이하	주 37시간 이상	유무급 휴가(직)	미취업
이용	41	42	39	44	40	20	43	63	49	25
미이용	34	34	34	32	35	40	33	5	35	40
모름	25	24	26	24	25	40	19	32	16	3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http://www.ssb.no/kontantstotte_en/tab-2011-05-02-04-en.html

complement de libre choix d' activite)'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조건은 3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20세 미만의 입양아여야 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지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첫째 아이만 있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적어도 24개월의 노후분담금, 둘째 아이를 낳았다면 최근 4년 이내에, 셋째 아이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노후 분담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병가, 출산휴가, 직업교육훈련휴가, 실업휴가(첫째 아이는 해당되지 않음),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지급기간 등은 모두 일을 한 시간에 포함된다.

수당지급액수는 2011년 기준으로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매달 379.79유로를 받으며, 이 때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60.40유로를 받는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그 이하의 시간으로 근무할 때 매달 245.51유로를 지불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426.12유로를 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를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달 141.62유로를 지급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322.24유로를 받는다.

수당지급기간은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출생일부터 혹은 모성이나 부성육아휴가, 입양휴가 혹은 병가가 끝나는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아이의 세 번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된다.

기초수당은 자녀를 위한 교육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조건은 출생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어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09년 소득이 자녀양육수당 수급조건 소득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1년 월 181.52유로이다.

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a comple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 activite)은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혜택보다 짧은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조건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최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적인 선택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 이거나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인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의 전체 금액이나 부분적 금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중간에

〈 표 6 〉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

단위: €

구분	100% 감소	50%이하 감소	50%초과 80% 이하 감소
기초수당 미지급시	560,49	426,12	426,12
기초수당 지급시	379,79	245,51	141,62

자료: CNAF(2011). Vos prestation 2011. <http://www.cnaf.fr> (2011. 8)

포기 할 수 없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의 수당액수는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는 801.39유로이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620.78유로이다. 동 수당은 아이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입양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될 수 있다. 모성육아, 부성육아, 질병 등에 대한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을 받는 경우, 이 ‘매일 수당’이 끝나는 달부터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은 다른 보상금 제도들과 병행될 수 없다.

나.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수당은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족성과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가족을 위한 국가적 정책차원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아동수당(Kindergeld)과 자녀세금공제(Steuerfreibeträge)가 중심이 된다.

독일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별도로 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모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최고 307유로, 연간 7,368유로를 지급받

을 수 있는 정규급여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고 460유로, 연간 최대 5,520유로를 받을 수 있는 대안급여 중 선택이 가능하였다. 당시 연간 총소득이 부부의 경우 51,130유로 이하이거나 한부모인 경우 38,350유로 이하이면 자녀의 생후 6개월까지 양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7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이 16,470유로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16,470유로 이상 23,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또한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 2001년도 출생한 경우 연간 부부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8,924유로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5,952유로로 조정된다. 둘째 자녀가 2002년도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9,267유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6,295유로로 조정되며, 2003년도 출생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경우 19,610유로, 한부모인 경우 16,638유로로 조정된다. 즉, 2001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방주마다 각기 다른 액수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으로 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을 없애고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 제도를 도입하였다.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Parenting Allowance and Parental Leave Act)」에 의하여 자녀 출생 후 출생이전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비용을 12개월 동안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까지 지원한다. 소득대체율은 높이고

기간은 축소하였다. 자녀 출생 이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00유로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적용되며, 소득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관여할 경우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부모는 14개월까지 지원한다. 부모수당 수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참고로 보편적 아동수당은 1954년 처음 제도화한 이후 연방정부아동수당법(Federal Child Allowance Act)에 의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된다. 2010년 현재 자녀수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에게는 164유로가 지급되고 세 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70유로가 지급되며 네 번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매월 195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대상아동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7세까지 연장 지급된다. 또한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가족기금의 명칭으로 노동청이 관여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의 재정은 전액 연방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한다.

4. 논의 및 정책 시사점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2010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육수당과 관련한 논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첫째, 양육수당의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양육수당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과 유사한 서비스 대체 성격의 제도이다. 두 국가는 취업모에게 정부가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체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선택권을 존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의 근로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참여를 전제로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개별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 무급 휴직중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당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부모의 근로를 전제로 한 전통적 양육수당이 아니고, 아동수당의 병급조정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서울특별시의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방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논의하던 끝에 대안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

둘째, 양육수당 지급으로 시설 이용의 감소 현상 가능성이 논의 될 수 있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1~2세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이 각각 44%, 35.7%(2002년)로 인근 덴마크 83%(1999년), 스웨덴 63%(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³⁾. 이러한 수치는 양육수당을 도입한

3) OECD(2006). Starting Strong II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국가들의 영아보육정책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이후에도 1, 2세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OECD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 높다는 점 등으로 영아 시설보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30%를 이용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아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은 출산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⁴⁾.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수당제도가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이 시설보육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 미이용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서, 지원수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양육수당제도는 여성을 전통적인 자녀양육자로 설정하고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회귀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모의 근로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여성취업률은 결코 낮지 않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결혼과 출산 연령대라 볼

수 있는 20대 후반 77.4%, 30대 중반 80.4%, 30대 후반 85.0%로 상당히 높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현상이 거의 없는 역U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6세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선택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는 1994년 둘째 자녀 확산 개혁 이후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⁵⁾. 이는 양육수당제도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는 장치들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2009년과 2010년에 수당을 받은 아동 규모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11만 4천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집행률이 65% 정도였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양육수당 단가 10만원은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10년 지원 수준으로 시설 미이용의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육수당 금액에 따라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양육수당제도가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작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

4) Castles F. G.(2003), The World Up 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London.

5) Piketty, 1998, Gonzalez, 2005 재인용.

정책동향

정하여야 한다,

첫째, 금액 상향조정은 우리나라 아동 양육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시설 중심이면서 보완하려는 소극적 정책이라면 금액 증가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처럼 적어도 일정 기간은 엄마가 기른다는 것을 상위 목표로 둔다면 그 기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 즉, 연령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되 그 기준 연령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휴직제도와 연동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로는 0세와 그 이상을 분리하는 정책이 적절하다.

둘째,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체 대상인 보육서비스 자체에 차이가 없으므로 향후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이 도입되면 양육수당도

이에 맞추어 지원 대상이나 수준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이므로 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 유아는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이므로 특히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강한 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넷째, 양육수당이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많이 언급하고 사용처를 지정한 바우처로 발행하는 방법을 논의하지만, 이는 원래 보육서비스 대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현금지원이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